

개성공단 관련 법규집

2004

통 일 부

목 차

1. 개성공업지구법·하위규정

■ 개성공업지구법('02. 11. 20)	1
■ 개발규정('03. 4. 24)	8
■ 기업창설·운영규정('03. 4. 24)	11
■ 세금규정('03. 9. 18)	15
■ 노동규정('03. 9. 18)	29
■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03. 12. 11)	36
■ 출입, 체류, 거주규정('03. 12. 11)	39
■ 세관규정('03. 12. 11)	43
■ 외화관리규정('04. 2. 25)	49
■ 광고규정('04. 2. 25)	51

2.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통신에관한합의서('02. 12. 8)	54
■ 개성공업지구통관에관한합의서('02. 12. 8)	57
■ 개성공업지구검역에관한합의서('02. 12. 8)	61
■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04. 1. 29)	64

3. 4대 경협합의서

■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02. 12. 16)	69
■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02. 12. 16)	74
■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02. 12. 16)	86
■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02. 12. 16)	91

4. 기타 관련 합의서

■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03. 7. 31)	93
■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03. 10. 12)	97
■ 남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02. 12. 6)	103
■ 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04. 4. 13)	109
■ 동·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임시도로통행의군사적보장을위한잠정합의서('03. 1. 27)	119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002.11.20)</p> <p>‘03.4.14 제3715호로 1차 개정</p> <p>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p>	
<p>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p> <p>제2조 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 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p> <p>제3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p>	<p>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p> <p>제4조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p> <p>제5조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p> <p>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7조 공업지구에서는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p>

<p>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거두어들여 할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p> <p>제8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9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p> <p>제10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p>	<p>제11조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p> <p>제12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 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p> <p>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제14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p> <p>제15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 안에</p>
---	--

개성공업지구법-관리

<p>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p>	<p>제20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p>
<p>제16조 개발업자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p>	<p>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p>
<p>제17조 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 시설 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p>	<p>제21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관리운영사업 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8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 대상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 총계획에 따라 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책임대할 수 있다.</p>	<p>제22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3.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접수, 보관 4.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5.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6.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 지역 판매 실현 7.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8.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
<p>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p>	<p>제23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p>

개성공업지구법-관리

<p>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26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p>
<p>제24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파견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p>	<p>제27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p>
<p>제25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제28조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계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p>제29조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 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p>
	<p>제30조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 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다.</p>

개성공업지구법-관리/기업창설

<p>개성시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p>	<p>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 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p>
<p>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 창설 운영</p>	
<p>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p>	<p>제35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제32조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반출입 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p>	<p>제36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p>
<p>제33조 공업지구에 들어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37조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4조 검사 검역 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p>	

개성공업지구법-기업창설

<p>제38조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42조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공업지구 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p>
<p>제39조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p>	<p>제43조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 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p>
<p>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요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p>	<p>제44조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 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p>
<p>제41조 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p>	<p>제45조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p>

<p>제5장 분쟁해결</p>	
<p>제46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p>	
<p>부칙</p>	
<p>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p> <p>제2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p>	

<p>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p> <p>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로 채택</p>	
<p>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개발에서 제도와 절차를 엄격히 세워 공업지구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바지한다.</p> <p>제2조 (개발업자선정) 개발업자선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따라 개발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제3조 (개발총계획의 작성)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작성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토지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하부구조건설계획, 구역별 개발계획,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 계획 같은 것을 반영한다.</p> <p>제4조 (개발총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실태자료와 기상수문자료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p>	<p>제5조 (개발총계획의 심의승인) 개발업자는 작성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내각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내각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대한 수정요구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6조 (계획적 개발 및 변경)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을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다르게 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20일 안으로 제기된 내용의 처리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p> <p>제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 이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관련한 사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p>

개발규정

<p>제8조 (철거, 이설, 주민이주비용)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속물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액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p>	<p>제12조 (공업지구 밖의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 밖에서 공업지구까지 연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하부구조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개발업자가 상업적 방법으로 보장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발업자와 협의하여 다른 투자자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p>
<p>제9조 (개발공사착수) 공업지구의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속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례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p>	<p>제13조 (기업배치) 개발업자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용도별로 기업 또는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개발업자는 기업의 배치, 토지이용권과 건물의 양도, 임대같은 사업을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p>
<p>제10조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건설할 수도 있다.</p>	<p>제14조 (건설허가) 공업지구에서 건설허가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대상건설을 하려는 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대상건설 설계문건을 내고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1조 (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도로, 전기, 가스, 용수 같은 것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p>	<p>제15조 (과제설계문건의 보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설허가를 한 대상의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p>

개발규정

<p>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접수 보관하여야 한다.</p>	<p>개발업자는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할 수 있다.</p>
<p>제16조 (역사유적유물의 처리) 공업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역사유적 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역사유적 유물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7조 (개발사업조건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생활상 편의보장,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p>	
<p>제18조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공화국의 노력, 물자, 용수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발업자사이에 계약을 맺고 보장하게 할 수도 있다.</p>	
<p>제19조 (개발업자의 사업권)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사업, 에네르기(에너지)공급사업, 수송사업, 물자보관사업, 광고사업 같은 분야의 사업권을 가진다. 필요에 따라</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3호로 채택</p> <p>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 등록, 운영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p> <p>제2조 (투자당사자, 투자부문)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는 공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상업, 금융,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할 수 있다.</p> <p>제3조 (투자장려) 공업지구에서는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창설을 특별히 장려한다. 장려부문의 기업은 세급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같은 우대를 받는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장려, 제한, 금지하는 업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p> <p>제4조 (기업창설형식) 공업지구에서 투자자는 단독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p>	<p>제5조 (기업의 규약) 기업은 규약을 가져야 한다. 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및 주소, 창설목적, 업종 및 규모,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기업책임자, 재정감결원의 임무와 권한, 주식, 채권의 발행사항, 이윤분배, 해산 및 청산, 규약의 수정보충 같은 내용을 밝힌다.</p> <p>제6조 (기업의 경영조건과 등록자본)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리성원과 종업원, 고정된 영업장소 같은 것을 두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10%이상 되어야 한다.</p> <p>제7조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기관)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과 관련한 준칙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8조 (기업의 창설신청) 투자자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기업책임자의 이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연간수입액과 이윤액, 관리기구,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며 기업의 규약, 자본신통확인서, 경제</p>
--	---

<p>기술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9조 (기업창설신청의 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힌 기업창설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p> <p>제10조 (투자기간)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해진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투자기일 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일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제11조 (투자형태) 투자자는 화폐재산이나 현물재산, 재산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재산과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한다.</p> <p>제12조 (기업등록신청) 투자자는 등록자본 또는 그 이상 액수의 투자를</p>	<p>한 다음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은 개발업자가 공업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한다.</p> <p>제13조 (기업등록신청내용) 기업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조업예정일,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며 기업창설승인서 사본, 토지이용권 등록증사본, 투자실적확인문건 같은 것을 첨부한다.</p> <p>제14조 (기업등록신청의 처리, 기업창설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한다.</p> <p>제15조 (세관, 세무등록)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은 공업지구세관에, 세무등록은 공업지구세무소에 한다.</p> <p>제16조 (경영활동범위 및 업종변경) 기</p>
---	--

<p>제16조 (경영활동범위 및 업종변경)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의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높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1조 (회계결산) 기업은 반년, 연간을 주기로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연간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p>
<p>제17조 (주식, 채권발행) 기업은 규약에서 정한데 따라 주식,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할수 있다. 주식, 채권 같은 것을 양도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다.</p>	<p>제22조 (예비자금조성) 기업은 결산이윤에서 정해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로 조성하며 등록자본을 높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데만 쓸 수 있다.</p>
<p>제18조 (경영물자, 제품반출입)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한 없이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생산한 제품과 구입한 물자를 공업지구 밖으로 내갈수 있다.</p>	<p>제23조 (기타 자금조성) 기업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기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쓸 수 있다.</p>
<p>제19조 (반출입신고)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은 물자반출입지점의 세관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24조 (이윤배당) 기업은 연간결산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가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윤배당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조성한 다음 남은 순소득금으로 한다.</p>
<p>제20조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연계) 기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통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원료, 자재, 부분품을 위탁가공할 수 있다.</p>	<p>제25조 (기업의 해산신고) 해산하려는 기업은 이사회 또는 출자가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해산신고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해산신고서를 낸 날을 기업의 해산일로 한다.</p>

<p>제26조 (청산위원회조직) 기업은 해산신고서를 낸 날부터 10일안으로 해산을 공개하고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지정한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9명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원명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에 해당하는 몫을 기업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5년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초과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여 준다.</p>
<p>제27조 (청산사업착수) 청산위원회는 성원명단을 승인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의 사업비용은 해산되는 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p>	<p>제30조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처리)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은 청산사업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공업지구안에서 처리하거나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p>
<p>제28조 (청산위원회의 사업내용)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p>제31조 (청산사업의 결속내용)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등록증과 함께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취소하고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자, 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을 통보한다. 2. 채권자회의를 소집한다. 3.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한다. 4.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5.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 6. 청산안을 작성한다. 7. 세금을 납부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다. 8.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확정한다. 9. 이밖에 청산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한다. 	<p>제32조 (지사, 영업소, 개인의 영업등록) 공업지구에서 지사, 영업소, 개인이 영리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해당 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p>

<p>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p> <p>2003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호로 채택</p> <p>제1장 일반규정</p>	
<p>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세무질서를 엄격히 세워 세금의 부과와 납부를 정확히 하는데 이 바지한다.</p> <p>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납축 및 해외동포, 외국인 이 속한다.</p> <p>제3조 (세무사업단위와 지도단위)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공업지구세무소가 한다. 공업지구세무소의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p> <p>제4조 (기업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에서 세무등록은 세무소에 한다. 이 경우 세무등록신청서와 기업등록증사본을 낸다. 세무등록은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한다.</p>	<p>제5조 (기업의 세무변경 및 취소) 기업의 세무변경등록은 통합, 분리되었거나 등록자본, 업종 같은 것을 변경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한다. 해산되는 기업의 세무등록 취소는 해산 20일전까지 한다.</p> <p>제6조 (개인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에 182일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개인의 세무등록은 20일안으로 한다. 이 경우 세무등록신청서를 낸다. 종업원의 세무등록수속을 기업이 할 수도 있다.</p> <p>제7조 (세무등록증발급) 세무등록증의 발급은 세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한다.</p> <p>제8조 (세무문건의 작성언어) 공업지구에서 세무문건은 조선말로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세무문건을 다른 나라말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p> <p>제9조 (세무문건의 종류와양식)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은 공업지구세무소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0조 (세무문건의 보존기간) 세무문건은 5년간 보존한다. 그러나 년간회계결산서, 고정재산계산장부는 기업이 운영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p> <p>제11조 (세금의 계산과 납부화폐) 공업지구에서 세금의 계산과 납부는 US\$로 한다.</p> <p>제12조 (세금의 납부절차) 세금의 납부는 세금납부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세금납부자에게 세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공업지구세무소에는 세금납부통지서를 보낸다.</p> <p>제13조 (잘못 납부한 세금의 처리)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소득세는 다음연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기 30일전까지, 개인소득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도시경영세는 납부하여야 할 날부터 60일안으로 한다.</p> <p>제14조 (과납액, 미납액 처리) 수정신고로 추가납부할 경우에는 세금납부의 무자가 미납액의 5%를 가산한 금액을 계산납부하며 과납액은 공업지구세무소가 검토하고 30일안으로 돌려 준다.</p>	<p>제15조 (세무등록, 세금납부기간) 세무등록, 세금납부는 정해진 기간에 한다.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세무등록,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p> <p>제16조 (합의서, 정부간 협정의 적용) 세금과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17조 (세금의 부과, 면제조건) 공업지구에서는 이 규정에 정한 세금만을 부과한다. 개발업자의 재산, 개발과 관련한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기업소득세</p> <p>제18조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료금소득 같은 것이, 기타소득에는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 증여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p>
--	--

세금규정

<p>제19조 (기업소득세의 세율)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그러나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p>	<p>제23조 (계산방법의 선택) 기업은 선택한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3년간 변경할 수 없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기업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1개월전에 공업지구세무소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p>
<p>제20조 (결산리윤의 확정방법) 결산리윤은 기업의 총 수입금에서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거래세 또는 영업세를 덜고 확정한다. 결산리윤의 확정에 필요한 수입항목, 비용지출항목, 계산시점과 가치평가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른다.</p>	<p>제24조 (경영손실금의 충당기간) 경영손실을 낸 기업은 다음해의 결산리윤으로 메꿀 수 있다. 경영손실을 메꾸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p>
<p>제21조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새로 창설된 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산선포일까지를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으로 한다.</p>	<p>제25조 (예정납부, 확정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기업은 6개월이 지난 다음 2개월안으로 예정납부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확정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 납부한다. 6개월기간의 리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2분의 1을 예정납부하여야 한다.</p>
<p>제22조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계산은 결산리윤에 이 규정 제19조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결산리윤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기업과 연간 판매 및 봉사수입액이 300만 US\$ 아래인 기업은 연간 판매 및 봉사수입액의 2% 또는 15%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p>	<p>제26조 (회계검증)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확정납부하기 전에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년간판매 및 봉사수입액이 300만 US\$ 아래인 기업은 회계검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p>

세금규정

<p>제27조 (기업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와 년간기업소득세납부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세금을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30조 (기업소득세 감면기간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은 리윤이 나는 해부터 연속하여 계산한다. 이 기간 경영손실이 난 해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에 포함시킨다.</p>
<p>제28조 (해산, 통합, 분리시 세금납부기간) 해산, 통합, 분리되는 기업은 그 선포일로부터 2개월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31조 (감면신청서의 제출)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기업은 공업지구세무소에 신청서와 경영기간, 재투자액을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명칭과 소재지, 업종, 리윤이 생긴 연도, 총 투자액, 거래은행, 독자리번호 같은 것을 밝힌다.</p>
<p>제29조 (기업소득세의 면제, 감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제32조 (감면해주었던 기업소득세의 회수조건) 이 규정 제29조에 정한 기간전에 철수, 해산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인 기업에 대하여서는 이미 감면하여 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한다.</p>
<p>1. 장려부문과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덜어준다.</p> <p>2.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2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1년간 50%를 덜어준다.</p>	<p>제33조 (비영리지사 등의 세율) 영리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 영업소, 사무소와 공업지구밖의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공업지구안에서 얻은 기타 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p>
<p>3. 리윤을 재투자하여 3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 연도에 바쳐야 할 세금에서 덜어준다.</p>	<p>1. 리자소득은 소득액의 10%</p>

세금규정

<p>2.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p> <p>3.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p> <p>제34조 (비영리지사 등의 세금납부기간 및 방법) 영리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수익단위가 다음달 10일안으로 신고납부한다. 공업지구밖의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공업지구안에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지불단위가 소득을 지불하기 전에 공제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한다.</p>	<p>제36조 (개인소득세의 세율)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보수에 대한 세율은 월로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US\$ 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 1에 따른다. 2. 증여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이 1만 US\$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2에 따른다. 3. 리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의 10%로 한다. 4.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5.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개인소득세</p> <p>제35조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에는 노동보수,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기술고문, 기능공양성, 상담 같은 경영봉사소득, 증여소득이 속한다.</p>	<p>제37조 (개인소득세의 계산방법)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월로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1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세금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세에 이 규정 부록 2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3.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4.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5.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p>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로동보수를 지불할 경우에는 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공제납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3.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p>제38조 (현금이 아닌 개인소득의 가격계산) 물품, 유가증권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것을 취득할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계산한다.</p> <p>제39조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하며 고업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지사, 영업소, 사무소를 대신하여 공업지구밖에 있는 	<p>제40조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남사이에 맺은 협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공화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리자와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소득 3.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대한 리자소득

세금규정

제4장 재산세	
제41조 (재산세의 납부의무)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영구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재등록하려는 건물 소유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변경된 건물의 가격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제42조 (재산세의 납부당사자) 재산세의 납부는 매해 1월 1일 현재로 건물소유자가 한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임대하였거나 저당하였을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산세의 부과대상) 재산세는 등록된 건물가격에 대하여 부과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건물등록증을 건물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야 한다.
제43조 (건물의 등록방법)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취득한 다음달 2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등록신청서를 내고 건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물등록신청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이름, 주소, 건물명, 단위, 수량, 건평, 내용년한, 건설년도, 취득가격 같은 것을, 양도받은 건물은 양도자의 이름, 주소 같은 것을 밝힌다.	제47조 (재산세의 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 3에 따른다.
제44조 (건물의 등록가격) 건물의 등록가격은 해당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제48조 (재산세의 계산방법) 재산세의 계산은 등록된 건물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45조 (건물의 재등록) 건물소유자는 등록된 건물의 가격이 달라졌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재등록을	제49조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공업지구세무소는 매년 2월안으로 재산세납부통지서를 건물소유자에게 발급하며 건물소유자는 재산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새로 건설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30일안으로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규정

제50조 (건물폐기시 과납세금의 반환) 건물을 폐기한 자는 건물폐기확인서와 함께 이름, 주소, 건물명, 폐기날짜, 납부한 재산세, 반환받을 재산세 같은 것을 밝힌 재산세반환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세무소는 신청내용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건물을 폐기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2. 상속 받은 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3.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4.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 같은 지출 5. 가족들의 부양료 30만 US\$
제51조 (새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새로 건설한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4조 (상속재산의 가격) 상속재산의 가격은 재산을 상속 받을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상속세의 세률)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 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액이 10만 US\$이상일 경우에는 이 규정 부록 4에 따른다.
제5장 상속세	
제52조 (상속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화폐재산, 현물재산,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보험청구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이 속한다.	제56조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 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덜고 남은 상속재산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률을 적용한다.
제53조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다음의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한다. 1.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제57조 (상속세의 납부재산) 상속세는 화폐재산으로 납부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속세를 화폐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가격, 수량, 품질,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는 리유 같은 것을 밝힌 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승인받은 다음 현물재산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세금규정

<p>소유날자 같은 것을 밝힌 자동차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동차를 등록하였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내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주어야 한다.</p>	<p>동차명, 폐기날자, 납부한자동차리용세, 반환 받은 자동차리용세 같은 것을 밝힌 자동차리용세반환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세무소는 신청내용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자동차를 폐기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리용세를 돌려 주어야 한다.</p>
<p>제79조 (자동차리용세의 세금액) 자동차리용세의 세금액은 이 규정 부록 8에 따른다.</p>	<p>제83조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 면제) 자동차를 60일이상 연속 리용하지 않은 자는 공업지구세무소에 신청서를 내고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리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p>
<p>제80조 (자동차리용세의 계산방법) 자동차리용세의 계산은 종류별 자동차대수에 이 규정 부록 8의 세금액을 적용하여 한다.</p>	<p>제9장 제재 및 신소</p>
<p>제81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기간 및 방법) 공업지구세무소는 매년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리용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새로 소유한자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안으로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84조 (연체료) 기업 또는 개인이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세금미납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p>
<p>제82조(자동차폐기시 과납세금의 반환) 자동차를 폐기한 자는 자동차폐기확인서와 함께 이름, 주소, 자</p>	<p>제85조 (제재대상과 벌금) 기업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세금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리유없이 세무등록, 건물등록, 자동차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세금납부신고서, 년간회계결산서 같은 세무문건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1,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3배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p><부록 1> 월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율표 (금액단위 : US\$)</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월로동보수</th> <th>세 료</th> </tr> </thead> <tbody> <tr> <td>1</td> <td>500이상~1,000</td> <td>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4%</td> </tr> <tr> <td>2</td> <td>1,000이상~3,000</td> <td>20+1,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7%</td> </tr> <tr> <td>3</td> <td>3,000이상~6,000</td> <td>160+3,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1%</td> </tr> <tr> <td>4</td> <td>6,000이상~1만</td> <td>490+6,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td> </tr> <tr> <td>5</td> <td>1만이상</td> <td>1,090+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td> </tr> </tbody> </table> <p><부록 2> 중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율표 (금액단위 : US\$)</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중여소득액</th> <th>세 료</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만이상~10만</td> <td>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td> </tr> <tr> <td>2</td> <td>10만이상~50만</td> <td>1,800+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5%</td> </tr> <tr> <td>3</td> <td>50만이상~100만</td> <td>2만 1,800+5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8%</td> </tr> <tr> <td>4</td> <td>100만이상~300만</td> <td>6만 1,8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1%</td> </tr> <tr> <td>5</td> <td>300만이상</td> <td>28만 1,800+3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4%</td> </tr> </tbody> </table> <p><부록 3> 건물에 대한 재산세</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건물용도</th> <th>세 료</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생산용건물</td> <td>0.1</td> </tr> <tr> <td>2</td> <td>주택용건물</td> <td>0.2%</td> </tr> <tr> <td>3</td> <td>상업용건물</td> <td>0.5%</td> </tr> <tr> <td>4</td> <td>오락용건물</td> <td>1%</td> </tr> </tbody> </table>	NO	월로동보수	세 료	1	500이상~1,000	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4%	2	1,000이상~3,000	20+1,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7%	3	3,000이상~6,000	160+3,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4	6,000이상~1만	490+6,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	1만이상	1,090+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NO	중여소득액	세 료	1	1만이상~10만	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	10만이상~50만	1,800+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	50만이상~100만	2만 1,800+5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8%	4	100만이상~300만	6만 1,8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5	300만이상	28만 1,800+3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NO	건물용도	세 료	1	생산용건물	0.1	2	주택용건물	0.2%	3	상업용건물	0.5%	4	오락용건물	1%
NO	월로동보수	세 료																																																		
1	500이상~1,000	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4%																																																		
2	1,000이상~3,000	20+1,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7%																																																		
3	3,000이상~6,000	160+3,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4	6,000이상~1만	490+6,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	1만이상	1,090+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NO	중여소득액	세 료																																																		
1	1만이상~10만	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	10만이상~50만	1,800+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	50만이상~100만	2만 1,800+5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8%																																																		
4	100만이상~300만	6만 1,8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5	300만이상	28만 1,800+3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NO	건물용도	세 료																																																		
1	생산용건물	0.1																																																		
2	주택용건물	0.2%																																																		
3	상업용건물	0.5%																																																		
4	오락용건물	1%																																																		
<p>제86조 (신소 및 처리) 세금부과 및 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세무소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신소할 수 있다. 공업지구세무소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의견 또는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세금규정

<p><부록 4> 상속재산에 대한 세률표 (금액단위 : US\$)</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상속재산액</th> <th>세 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0만이상~100만</td> <td>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6%</td> </tr> <tr> <td>2</td> <td>100만이상~500만</td> <td>5만 4,0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td> </tr> <tr> <td>3</td> <td>500만이상~1,500만</td> <td>45만 4,000+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5%</td> </tr> <tr> <td>4</td> <td>1,500만이상~3,000만</td> <td>195만 4,000+1,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td> </tr> <tr> <td>5</td> <td>3,000만이상</td> <td>495만 4,000+3,0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5%</td> </tr> </tbody> </table> <p><부록 5> 거래세의 세률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구 분</th> <th>세 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전기, 전자, 금속, 기계제품</td> <td>1</td> </tr> <tr> <td>2</td> <td>연료, 광물, 화학, 건재, 고무제품</td> <td>1</td> </tr> <tr> <td>3</td> <td>섬유, 신발, 일용, 가죽, 기타 공업제품</td> <td>1</td> </tr> <tr> <td>4</td> <td>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td> <td>2</td> </tr> <tr> <td>5</td> <td>술, 담배, 기타 기호품</td> <td>15</td> </tr> </tbody> </table>	NO	상속재산액	세 률	1	10만이상~100만	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6%	2	100만이상~500만	5만 4,0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3	500만이상~1,500만	45만 4,000+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	1,500만이상~3,000만	195만 4,000+1,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	3,000만이상	495만 4,000+3,0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NO	구 분	세 률(%)	1	전기, 전자, 금속, 기계제품	1	2	연료, 광물, 화학, 건재, 고무제품	1	3	섬유, 신발, 일용, 가죽, 기타 공업제품	1	4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2	5	술, 담배, 기타 기호품	15	<p><부록 6> 영업세의 세률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구 분</th> <th>세 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건설, 교통운수부문</td> <td>1</td> </tr> <tr> <td>2</td> <td>금융부문</td> <td>1</td> </tr> <tr> <td>3</td> <td>상업부문</td> <td>2</td> </tr> <tr> <td>4</td> <td>급양, 관광, 관광, 광고, 위생편의부문</td> <td>1</td> </tr> <tr> <td>5</td> <td>교육, 문화, 체육, 기타 봉사부문</td> <td>1</td> </tr> <tr> <td>6</td> <td>부동산거래부문</td> <td>2</td> </tr> <tr> <td>7</td> <td>오락부문</td> <td>7</td> </tr> </tbody> </table> <p><부록 7> 도시경영세의 세률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납부의무자</th> <th>세 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기업</td> <td>0.5%</td> </tr> <tr> <td>2</td> <td>개인</td> <td>0.5%</td> </tr> </tbody> </table>	NO	구 분	세 률(%)	1	건설, 교통운수부문	1	2	금융부문	1	3	상업부문	2	4	급양, 관광, 관광, 광고, 위생편의부문	1	5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봉사부문	1	6	부동산거래부문	2	7	오락부문	7	NO	납부의무자	세 률	1	기업	0.5%	2	개인	0.5%
NO	상속재산액	세 률																																																																				
1	10만이상~100만	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6%																																																																				
2	100만이상~500만	5만 4,0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3	500만이상~1,500만	45만 4,000+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	1,500만이상~3,000만	195만 4,000+1,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	3,000만이상	495만 4,000+3,0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NO	구 분	세 률(%)																																																																				
1	전기, 전자, 금속, 기계제품	1																																																																				
2	연료, 광물, 화학, 건재, 고무제품	1																																																																				
3	섬유, 신발, 일용, 가죽, 기타 공업제품	1																																																																				
4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2																																																																				
5	술, 담배, 기타 기호품	15																																																																				
NO	구 분	세 률(%)																																																																				
1	건설, 교통운수부문	1																																																																				
2	금융부문	1																																																																				
3	상업부문	2																																																																				
4	급양, 관광, 관광, 광고, 위생편의부문	1																																																																				
5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봉사부문	1																																																																				
6	부동산거래부문	2																																																																				
7	오락부문	7																																																																				
NO	납부의무자	세 률																																																																				
1	기업	0.5%																																																																				
2	개인	0.5%																																																																				

세금규정

<p><부록 8> 자동차리용세의 금액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구 분</th> <th>세액(US\$)</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승용차 대당/년</td> <td>40</td> </tr> <tr> <td rowspan="3">2</td> <td>버스</td> <td></td> </tr> <tr> <td>12석까지 대당/년</td> <td>40</td> </tr> <tr> <td>13-30석까지 대당/년</td> <td>50</td> </tr> <tr> <td></td> <td>31석이상 대당/년</td> <td>60</td> </tr> <tr> <td>3</td> <td>화물자동차</td> <td></td> </tr> <tr> <td></td> <td>체톤당/년</td> <td>3</td> </tr> <tr> <td>4</td> <td>자동차전차 대당/년</td> <td>10</td> </tr> <tr> <td>5</td> <td>특수차 대당/년</td> <td>20</td> </tr> </tbody> </table>	NO	구 분	세액(US\$)	1	승용차 대당/년	40	2	버스		12석까지 대당/년	40	13-30석까지 대당/년	50		31석이상 대당/년	60	3	화물자동차			체톤당/년	3	4	자동차전차 대당/년	10	5	특수차 대당/년	20	
NO	구 분	세액(US\$)																											
1	승용차 대당/년	40																											
2	버스																												
	12석까지 대당/년	40																											
	13-30석까지 대당/년	50																											
	31석이상 대당/년	60																											
3	화물자동차																												
	체톤당/년	3																											
4	자동차전차 대당/년	10																											
5	특수차 대당/년	20																											

<p>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p> <p>2003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호로 채택</p> <p>제1장 일반규정</p>	<p>제6조 (로력동원의 금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에는 종업원을 동원시킬 수 없다.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종업원을 동원시킬수 있다.</p> <p>제7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로력채용과 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로력의 채용과 해고</p> <p>제8조 (로력의 보장자) 공업지구의 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는 사업은 로력알선기업이 한다. 기업은 필요한 로력을 로력알선기업에 신청하여야 한다.</p> <p>제9조 (로력알선계약의 체결) 기업과 로력알선기업은 로력알선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은 기능시험, 인물심사 같은 것을 통하여 필요한 로력을 선발할 수 있다. 로력알선계약에는 채용할 로력자수, 성별, 연령, 업종, 기능, 채용기간, 로임수준 같은 것을 밝힌다.</p>
<p>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에 필요한 로력의 채용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활동과 종업원의 로동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p> <p>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 창설된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포함)과 종업원에게 적용한다.</p> <p>제3조 (로력의 채용원칙) 기업에 필요한 로력은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한다. 필요에 따라 기업은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로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p> <p>제4조 (로동조건외의 보장)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p> <p>제5조 (로임의 제정) 종업원의 로임은 종업원 월 최저로임에 기초하여 기업이 정한다.</p>	

<p>제10조 (로력의 채용계약) 기업은 선발된 로력자와 월로임액, 채용기간, 로동시간 같은 것을 확정하고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로력채용계약을 맺은 로력자는 기업의 종업원으로 된다.</p> <p>제11조 (로력알선료) 로력알선기업은 기업으로부터 로력알선료를 받을 수 있다. 로력알선료는 로력알선기업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2조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채용)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지식정도, 기술자격, 직종 같은 것을 밝힌 로력채용문건을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로력채용문건 사본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p> <p>제13조 (로동규칙의 작성과 실시) 기업은 종업원대표와 협의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로동규칙을 작성하고 실시할 수 있다. 로동규칙에는 로동시간과 휴식시간, 로동보호기준, 로동생활질서, 상벌기준 같은 것을 밝힌다.</p>	<p>제14조 (종업원의 해고조건) 로력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병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자기직종 또는 다른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2.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종업원이 남을 경우 3. 기술과 기능의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4.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로동생활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p>제15조 (종업원의 해고) 종업원을 내보내려는 기업은 그 사실을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내보낸 종업원의 명단은 로력알선기업에 내야 한다.</p> <p>제16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는 조건)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병을 앓거나 작업과정에 부상당하여 치료받고 있는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였을 경우 2. 병으로 치료받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 임신, 산전산후휴가, 어린이에게 젖먹이는 기간인 경우
---	--

<p>제17조 (종업원의 사직조건) 조업원이 사직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2. 직종이 맞지 않아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였을 경우 <p>제18조 (종업원의 사직절차) 사직하려는 종업원은 7일전까지 기업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 기업은 사직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서 사직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분의 기업은 연간 노동시간범위에서 종업원의 주로동시간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p> <p>제21조 (노동시간의 준수) 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력채용계약 또는 노동규칙에 정해진 노동시간안에서 로동을 시켜야 한다. 연장작업이 필요한 기업은 종업원대표 또는 해당 종업원과 합의하여야 한다.</p> <p>제22조 (명절과 공휴일의 휴식보장) 기업은 종업원에게 공화국의 명절일과 공휴일과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로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15일안으로 대휴를 주거나 해당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p>
<p>제19조 (퇴직보조금의 지불) 기업의 사정으로 1년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의 계산은 3개월 평균 월로임에 일한 해수를 적용하여 한다.</p> <p>제3장 노동시간과 휴식</p> <p>제20조(노동시간)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종업원노동시간은 주 48시간으로 한다. 기업은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종업원의 주로동시간을 48시간보다 짧게</p>	<p>제23조 (휴가보장) 기업은 종업원에게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를 주며 중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종업원에게는 2~7일간의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한 여성종업원에게는 60일간의 산전, 90일간의 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p> <p>제4장 노동보수</p>

<p>제24조 (노동보수의 내용) 노동보수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한다. 기업은 종업원의 노동보수를 일한 실적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p> <p>제25조 (종업원의 월최저로임) 기업의 종업원월최저로임은 50US\$로 한다. 종업원 월최저로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최저로임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 종업원 월최저로임을 높이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p> <p>제26조 (종업원월로임의 제정) 종업원의 월로임은 종업원 월최저로임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조업준비기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과 견습공, 무기능공의 로임은 종업원 월최저로임의 70%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p> <p>제27조 (휴가기간의 로임지불) 기업은 정기 및 보충휴가를 받은 종업원에게 휴가일수에 따르는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여성종업원에게는 60일에 해당한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p>	<p>제28조 (휴가비의 계산방법) 휴가비의 계산은 휴가받기 전 3개월간의 로임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로임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한다.</p> <p>제29조 (생활보조금) 기업은 자기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데 대하여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60%이상에 해당한 생활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생활보조금을 주는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생활보조금에는 사회보험료, 도시경영세를 부과하지 않는다.</p> <p>제30조 (연장, 야간작업의 가급금) 기업은 노동시간밖의 연장작업 또는 야간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5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명절일, 공휴일에 로동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밖에 야간작업을 시켰을 경우에는 로임액의 10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야간작업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 로동이 속한다.</p>
---	--

<p>제31조 (상금의 지불)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리윤의 일부로 상금 기금을 조성하고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을 줄 수 있다.</p> <p>제32조 (로동보수의 지불) 기업은 로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금은 상품으로 줄 수도 있다. 로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시작하였거나 기업에서 내보낸 자에게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p>	<p>제36조 (로동안전기술교육) 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로동안전기술교육기간과 내용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기업이 정한다.</p> <p>제37조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의 공급기준은 기업이 정한다.</p> <p>제38조 (로동재해위험 제거) 로동재해위험이 생긴 기업은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기업은 로동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p>
<p>제5장 로동보호</p>	
<p>제33조 (산업위생조건의 보장) 기업은 고열, 가스, 먼지, 소음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같은 사업위생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p>	<p>제39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기업은 작업과정에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 중독 같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즉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심의를 조직진행하여야 한다.</p>
<p>제34조 (여성로력의 보호) 임신 6개월이 지난 여성종업원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다. 기업은 여성종업원을 위한 로동위생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p>	<p>제6장 사회문화시책</p>
<p>제35조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기업은 실정에 맞게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을 꾸리고 운영할 수 있다.</p>	

<p>제40조 (사회문화시책의 실시) 공업지구의 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의 종업원과 그 가족은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문화시책의 혜택을 받는다. 사회문화시책에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장 같은 것이 속한다.</p> <p>제41조 (사회문화시책기금의 조성) 사회문화시책비는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보장한다. 사회문화시책기금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사회보험료와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조성한다.</p>	<p>제44조 (사회문화시책기금의 리용) 사회문화시책기금의 리용질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45조 (문화후생기금의 리용)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리윤의 일부로 종업원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조성하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의 기술문화수준의 향상과 체육사업, 후생시설운영 같은데 쓴다.</p>
<p>제7장 제재 및 분쟁해결</p>	
<p>제42조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업은 공화국공민인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월로임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문화시책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보험료밖의 다른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p>	<p>제46조 (벌금 및 영업중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 100~2000 US\$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벌금 및 영업중지는 사전에 경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한다.</p>
<p>제43조 (사회문화시책기금의 납부) 공화국공민인 종업원은 월로임액의 일정한 몫을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7조 (사회보험연체료)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매일 0.05%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미납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p>

제48조 (분쟁해결방법) 로동과 관련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로동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49조 (신소 및 처리) 이 규정을 어긴 것과 관련하여 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과 종업원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소할 수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의견 또는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2003년 12월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1호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자와 지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은 개발업자가 한다. 설립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투자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법인으로 된다.

제3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은 개발업자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리사장의 지위) 공업지구관리기관에는 리사장 1명을 둔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 전반을 관할한다.

제5조 (리사장의 임명과 해임) 리사장의 임명 또는 해임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해당 사업준칙에 따른다. 그러나 초대리사장의 임명은 개발업자가 한다.

제6조 (기구와 정원수의 제정)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기구와 정원수는 리사장이 정한다. 리사장은 공업지구의 개발계획과 그 실행 정도에 맞게 기구와 정원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기관 성원의 자격과 조건)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는 전문지식과 해당부문의 사업경험을 소유한자가 될 수 있다. 공업지구안에 설립된 기업 또는 경제조직에 종사하는 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 성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제8조 (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은 리사장이 한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 날부터 3일 안으로 그 명단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 (필요한 관리기관 성원의 요청)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꾸리는데 필요한 성원을 중앙공업지구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p>지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중앙 공업지구지도기관은 리사장이 요 구하는 성원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계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 지역으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 송수단에 대한 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 임하는 사업
<p>제10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공인, 명판)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인과 명판 을 가진다. 공인, 명판의 규격과 형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 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 한다.</p>	<p>제14조 (년간지구개발계획) 공업지구관리 기관은 년간지구개발계획을 자체로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년간지구개발계획은 공업지구개 발총계획과 단계별계획에 기초하 여야 한다.</p>
<p>제11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신청)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준비사업을 끝내고 기관명칭, 기구와 정원수 같은 것을 밝힌 기관등록신청서를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p>	<p>제15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사업연계)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 구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 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사업 하러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 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p>
<p>제12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 설립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기관등 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등 록을 한 날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일로 한다.</p>	<p>제16조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 공업 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대표들로 기업책임자회의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업책임자회의에서는</p>
<p>제13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 공업 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p>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p>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 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토의 하고 대책한다.</p>	<p>제21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예산을 자체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년간회계결산 서는 다음해 3월 안으로 중앙공업 지구지도기관에 낸다.</p>
<p>제17조 (의견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 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8조 (사업협의 및 보고) 공업지구관리 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 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정상 적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총화자료는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으로 한다. 수 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p>	
<p>제20조 (부족되는 운영자금의 보충) 부족 되는 운영자금은 공업지구관리기 관이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 포함)으로부터 받아 보 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월 노임총액의 0.5%로 한다.</p>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호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자,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측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로 출입하는 남측 인원, 수송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들의 수송수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출입사업기관)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에는 출입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제4조 (수속의 당사자) 출입, 체류, 거주, 수속은 당사자가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나 초청단위, 대리인도 출입, 체류, 거주수속을 할 수 있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의 출입, 체류, 거주수속은 부모나 후견인이 한다.

제5조 (출입통로와 그 지정)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이 정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통로의 변경질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업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된 증명서를 가진 자
5.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가진 자
6. 출입, 체류, 거주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한 자

제8조 (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과 자동차통행증의 발급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해당 증명서 발급준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9조 (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정형통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인원, 수송수단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증명서의 발급정형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원의 출입) 인원은 여권(합의한 대상에 한함) 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 열차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공업지구로 출입하여야 한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은 동반자로 기재한 증명서를 소유한 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장기체류자, 거주자는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가지고도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 (수송수단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는 이 규정 제8조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통행증을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열차는 당국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 검역)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출입통로에서 출입검사, 세관검사와 위생검역,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안전과 출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을 과학 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3조 (체류분류 및 체류기간) 인원은 공업지구에 단기 또는 장기로 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공업지구로 도착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으로 한다. 체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체류기일연장) 공업지구로 들어 온 자는 체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기일이 끝나기 3일 전에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일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체류등록) 공업지구로 도착한 자는 48시간 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거주지, 체류목적, 기간 같은 것을 밝힌 체류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 (체류등록제외대상)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로 도착한 날부터 7일안으로 돌아가는 자
2. 남측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기관의 성원
3. 관광객
4.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출입, 체류, 거주규정

<p>제17조 (거주등록) 공업지구에 1년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21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연장)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p>
<p>제18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 장기체류, 거주하려는 자는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체류 또는 거주하려는 곳과 기간, 이유 같은 것을 밝히고 최근 6개월안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사진(3×4cm) 4매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2조 (거주지변경과 그 등록) 공업지구에 거주한 자는 필요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를 옮긴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지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19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은 17살 이상의 성인에게 발급한다. 미성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기재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3조 (출생, 사망, 결혼등록) 공업지구에서 출생, 사망, 결혼 같은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등록신청서와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문건을 내고 해당 등록을 한다. 당사자는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20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p>	<p>제24조 (증명서의 재발급) 거주등록증, 체류등록증,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 자동차통행증 같은 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자는 제때에</p>

출입, 체류, 거주규정

<p>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p>	<p>제29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반환) 장기체류, 거주하던 자는 사업을 끝마치고 돌아가려 할 경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바쳐야 한다.</p>
<p>제25조 (공업지구밖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으로 가려는 자는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증의 발급신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하여야 한다.</p>	<p>제30조 (규정하지 않은 사항의 협의처리)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p>
<p>제26조 (수수료)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유효기간연장, 거주지변경등록 수속 같은 것을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27조 (증명서의 소지) 공업지구에서 체류, 거주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p>
<p>제28조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보장)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체류자, 거주자를 구속, 체포할 수 없으며 몸이나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일반규정</p> <p>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세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취 물자의 반출입과 출입하는 인원, 운수수단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p> <p>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 창설된 기업(개발업자 포함)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지사라 한다)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운수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p>	<p>제3조 (세관의 설치) 공업지구의 세관은 공업지구의 출입통로에 설치한다. 기업활동 또는 세관검사, 감독에 편리한 장소에도 세관을 설치할 수 있다. 공업지구로 나드는 개인과 운수수단, 물자와 우편물은 세관이 설치된 곳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p> <p>제4조 (반출입신고제)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p> <p>제5조 (세관등록원칙) 공업지구에서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반출입할 수 있다.</p> <p>제6조 (반출입금지물품)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 수 없다. 반출입금지물품은 이 규정의 부록으로 정한다.</p> <p>제7조 (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p>
---	--

<p>제8조 (협의처리사항)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p> <p>제9조 (해당 법규의 적용) 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지역으로 나드는 세관사업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p> <p>제10조 (세관등록 및 수속의 당사자) 세관등록 및 수속은 해당 기업 또는 지사가 한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도 세관등록 및 수속을 할 수 있다.</p> <p>제11조 (세관등록기일) 기업, 지사는 기업창설 또는 지사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12조 (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기업 또는 지사등록증의 사본, 공인, 명판의 도안,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3조 (세관등록증의 발급) 세관은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p> <p>제14조 (업종변경통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세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p> <p>제15조 (운수수단의 등록)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를 자주 오가는 운수수단(철도차량제외)은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에 등록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는다.</p> <p>제16조 (운수수단등록신청서) 운수수단을 등록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운수수단신청서에는 운수수단의 번호, 차종, 차형과 소속, 생산년도, 배기량, 적재량 또는 정원수, 운행목적, 운행기간,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p> <p>제17조 (운수수단등록증의 발급, 유효기간 연장) 세관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 운수수단을 등록하고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p>
---	---

<p>운수수단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p> <p>제18조 (반출입신고서의 제출)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품명, 수량, 규격, 가격과 출발지, 도착지, 송화인, 수화인 같은 것을 밝힌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물자반출입신고서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낼 수도 있다.</p> <p>제19조 (위탁가공물자의 신고) 기업, 지사는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을 하려 할 경우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에는 품명, 수량, 규격, 가공비와 위탁자, 수탁자, 가공기간, 가공장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p> <p>제20조 (열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의 신고) 열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에 대한 세관신고는 공업지구안의 해당 철도역이 한다. 철도역은 열차가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짐부침표, 차무이표, 짐나름표, 출하명세서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p> <p>제21조 (우편물의 신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보내 온 우편물에 대한</p>	<p>세관신고는 공업지구 우편국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해당 기업, 지사,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p> <p>제22조 (휴대품의 신고) 개인은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따로 한다.</p> <p>제23조 (외화, 귀금속 및 보석의 신고)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세관신고 없이 반출입한다. 그러나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반출입할 수 있다.</p> <p>제3장 세관검사 및 감독</p> <p>제24조 (세관검사 및 감독기관) 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우편물, 개인의 휴대품,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와 감독은 공업지구 세관이 한다.</p> <p>제25조 (반출입물자의 검사지점)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물자의 도착지점 또는 출발지점에서 한다. 적은량의 산적집이나 짐칸봉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세관통로에서 검사할 수 있다.</p>
---	---

<p>제26조 (반출입물자의 검사방법)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물자를 운수수단에 싣거나 부릴 때 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신고서와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p> <p>제27조 (우편물의 검사)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국의 해당 일군 또는 우편물임자, 대리인의 립회밀에 한다. 우편국은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내주거나 공업지구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소포속에는 돈, 유가증권 같은 것을 넣을 수 없다.</p> <p>제28조 (휴대품의 검사) 개인의 휴대품(따로 붙여 오는 짐 포함)에 대한 세관검사는 기계로 한다. 기계로 검사할 수 없거나 검사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헤쳐 보는 방법으로도 검사할 수 있다. 세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인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p> <p>제29조 (운수수단의 검사지점)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도로 또는 철도의 세관통로에서 한다. 세관통로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세관의 승인이 없이 세관통제구역을 벗어 날 수 없다.</p>	<p>제30조 (물자수송의 감독) 세관은 세관통로와 도착지 사이 또는 출발지와 세관통로 사이의 물자수송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p> <p>제31조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의 검사)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p> <p>제32조 (반출입물자의 수송수단)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반출입물자를 짐함, 유개차와 같은 운수수단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산적으로 수송하는 물자, 적은 량의 물자는 짐함 또는 유개차가 아닌 운수수단으로도 수송할 수 있다.</p> <p>제33조 (검사 및 감독협조)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해당 기업, 지사, 개인은 세관의 검사 및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34조 (보세구역, 보세창고설치) 공업지구에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기업, 지사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에 대한 세관의 감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p>
---	--

세관규정

<p>제35조 (보세구역, 보세창고운영) 보세전시장,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물자를 보관할 수 없다. 보세물자의 반출입과 보세공장에서 보세물자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는 작업, 선별, 재포장 작업 같은 것은 세관의 감독 밑에 한다.</p>	<p>개인은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안에 초과분에 해당하는 관세를 돌려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돌려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세를 적게 부과한 물자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통과시킨 날부터 1년안에 해당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시킬 수 있다.</p>	
<p>제4장 관세 및 세관요금</p>		
<p>제36조 (관세납부통지서발급)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기업 또는 지사에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40조 (세관요금) 세관등록증, 운수수단 등록증을 발급 받은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해당한 요금을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요금은 세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제37조 (관세기준가격과 계산) 공업지구에서 관세의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공업지구 도착가격으로 한다. 관세의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율에 따라 한다.</p>	<p>제5장 제재 및 신고</p>	
<p>제38조 (관세납부)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기업, 지사는 지적된 은행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관세납부증을 받아 세관에 내야 한다.</p>	<p>제41조 (역류 및 벌금적용) 세관은 이 규정을 어긴 반출입물자와 운수수단, 개인의 휴대품을 역류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p>	
<p>제39조 (관세의 반환, 추가부과)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업, 지사 또는</p>	<p>제42조 (몰수) 금지품, 밀수품은 몰수한다. 밀수행위에 이용한 운수수단도 몰수할 수 있다.</p>	

세관규정

<p>제43조 (신고 및 그 처리기일) 공업지구의 세관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세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부록 2 공업지구에서 내갈 수 없는 물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2) 무전기와 그 부속품 3)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4) 역사유물 5) 기밀에 속하는 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것 포함)과 그 원고, 필립,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6) 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p>부록 1 공업지구에 들여 올 수 없는 물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기, 총탄, 폭발물(공업지구공사용으로 허가된 폭약, 뇌관, 남포심지, 도폭선 같은 것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2) 배틀이 10배이상 되는 쌍안경, 망원경, 160mm이상의 고정된 렌즈가 달린 사진기 3) 무전기와 그 부속품 4)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5) 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 또는 그 원고, 필립,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 6)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들여오는 정해진 물품 7) 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외화관리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외화관리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2004년 2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결정 제16호로 채택</p> <p>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p> <p>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공업지구에서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p> <p>제3조 (외화관리당사자) 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그러나 공화국의 외화수입금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p> <p>제4조 (외화의 범위) 외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p> <p>1. 전환성외화 현금</p> <p>2.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같은 유가증권</p>	<p>3.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지불수단</p> <p>4.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오스미움, 이리디움 같은 귀금속</p> <p>제5조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 공업지구에서는 전환성외화현금을 유통시킨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6조 (환자시세) 유통화폐의 환자시세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제금융시장의 환자시세에 따른다.</p> <p>제7조 (기업의 외화돈자리개설)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설립된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돈자리를 둘 은행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p> <p>제8조 (투자은행의 업무내용) 공업지구에서 설립된 투자은행은 외국환자업무와 그밖의 금융업무를 할수 있다. 그러나 투자은행은 조선원과 관련한 환자업무를 할수 없다.</p> <p>제9조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제출) 공업지구에서 설립된 투자은행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p>
--	---

외화관리규정

<p>제10조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의 업무내용) 세금, 토지사용료, 사회보험료 같은 납부금의 관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종업원과 관련한 외화결제 또는 외화자금거래 업무는 공업지구에서 설립된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이 한다.</p> <p>제11조 (예금의 비밀보장과 리자계산) 은행은 외화예금의 비밀을 보장하며 리자를 예금자에게 정확히 계산 지불하여야 한다.</p> <p>제12조 (공업지구밖의 돈자리개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당 은행의 명칭, 소재지, 돈자리를 개설할 날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p> <p>제13조 (외화수입지출문건제출) 공업지구밖의 은행에 돈자리를 둔 기업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수입지출문건을 작성하여 다음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p> <p>제14조 (지불 및 결제방식) 기업과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돈자리를 리용하여 거래에 따르는 지불 및 결제를 할수 있다.</p>	<p>결제는 송금결제, 신용장결제, 현금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방식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p> <p>제15조 (개인의 외화보유) 개인은 번 외화 또는 공업지구에 가지고 들어 온 외화를 제한없이 소지하거나 은행에 예금할수 있다.</p> <p>제16조 (외화반출입) 공업지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외화를 제한없이 들여 오거나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이 경우 귀금속밖의 외화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다.</p> <p>제17조 (외화송금) 기업과 개인은 리운, 로임 같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공업지구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p> <p>제18조 (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은행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수 있다.</p>
---	--

광고규정

<p>광고규정</p> <p>2004년 2월 25일</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p> <p>결정 제17호로 채택</p>	<p>제3조 (광고와 광고업의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기업, 개인, 경제조직은 광고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광고업도 할수 있다.</p> <p>제4조 (광고사업관리기관) 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에 대한 관리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p> <p>제5조 (광고업 합의, 승인) 공업지구에서 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개발업자와 합의한 다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업의 승인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p> <p>제6조 (광고업자의 자격) 광고업자는 광고의 계획, 설계, 제작, 설치, 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원과 설비를 갖추고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p> <p>제7조 (광고의 수단) 광고는 광고판, 전기 광고판, 봉사간판, 소책자를 리용하여 한다. 필요에 따라 인터넷 같은 것을 리용하여 광고를 할수도 있다.</p> <p>제8조 (광고계약) 광고업자에게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그와 광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광고계약에서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광고물의</p>
<p>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표기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광고》란 생산, 판매, 봉사, 로력채용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광고물을 리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p> <p>2. 《광고물》이란 광고의 내용을 담은 수단 또는 그를 전시하기 위한 시설이다.</p> <p>3. 《광고주》란 광고를 하려는 기업, 개인, 경제조직이다.</p> <p>4. 《광고업》이란 광고물을 설계, 제작, 설치, 관리하는 것 같은 광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p> <p>5. 《광고업자》란 광고업을 하는 기업, 지사, 영업소 같은 것이다.</p>	

광고규정

<p>형식, 규칙, 수량, 설치장소, 설치기간, 광고비, 위약책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p> <p>제9조 (광고금지대상) 다음의 광고는 할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남관계발전에 저해를 주는 광고 2. 퇴폐적인 광고 3. 허위적인 광고 4. 생산, 판매, 제공이 금지된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광고 5. 다른 기업, 상품 또는 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 <p>제10조 (광고내용의 정확성담보)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하여 광고하려는 광고주는 광고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p> <p>제11조 (광고물의 문자표기) 광고물의 문자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표기를 국제 공용어나 그밖의 언어로 할수도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조선어로 된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p> <p>제12조 (제3자의 명칭과 건물, 시설물, 부지의 리용동의) 제3자의 명칭 같은 것을 광고에 리용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다른 기업이나 개인, 경제조직의 건물, 시설물, 부지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제13조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장소, 설치기간 같은 것을 밝힌 야외광고물설치신청서를 내야 한다.</p> <p>제14조 (야외광고물설치신청의 승인 또는 부결) 야외광고물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7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5조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할수 있는 야외광고물)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할수 있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앞항에 해당되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신고를 하고 설치한다.</p>
--	---

<p>제16조 (야외광고물의 설치금지구역) 야외광고물은 혁명사적지구역, 력사유적보호구역, 명승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와 도시공고시설, 운수수단, 교통시설의 리용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설치할수 없다.</p> <p>제17조 (야외광고물의 변경) 승인을 받고 설치하였던 야외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장소, 설치기간 같은 것을 변경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밝힌 야외광고물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p> <p>제18조 (야외광고물의 문화성보장)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19조 (야외광고물의 철수, 정리) 야외광고물의 설치기간이 끝났을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것을 7일 안으로 철수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던 장소를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p> <p>제20조 (수수료) 공업지구관리기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광고업승인,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과 관련한 수수료료를 받을수 있다.</p>	<p>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p> <p>제21조 (규정을 어긴 광고의 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한 광고에 대하여 제때에 결함을 시정시키거나 해당 야외광고물을 철수시켜야 한다. 결함의 시정, 야외광고물의 철수와 관련한 비용은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부담한다.</p> <p>제22조 (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광고중지, 광고업승인취소, 벌금부과 같은 제재를 들수 있다.</p>
---	---

<h2>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h2> <p>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p> <h3>제1조 정의</h3> <p>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p> <p>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p> <p>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p> <p>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향,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p>	<p>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p> <h3>제2조 기본원칙</h3> <p>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p> <p>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p> <p>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p> <p>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p> <p>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3조 우편물의 교환</p> <p>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p> <p>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p> <p>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p> <p>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p> <p>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p> <p>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방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 정보제공</p> <p>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방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해석 및 적용</p> <p>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 수정 및 보충</p> <p>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효력발생 및 폐기</p> <p>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수표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p>
--	---

<p>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p> <p>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윤 진 식 박 창 련</p>	
--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물자”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 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 나. 적재량 또는 정원
 -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p>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p> <p>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p> <p>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조 해석 및 적용</p> <p>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조 수정 및 보충</p> <p>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정보제공</p> <p>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조 효력발생 및 폐기</p> <p>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p> <p>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p> <p>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p>	

<p>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운 진 식 박 창 련</p>			
<p style="text-align: center;">부 록</p> <p>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p>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측</p> <p>통관 물품 말한다 열차·차량운행사무소 명부 상호 통관절차 송하인 수하인 운송 운송인 컨테이너 봉인의 이상유무 개장 서명 발효 문본 효력을 발생한다 통행차량, 차량</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 style="text-align: center;">북 측</p> <p>세관통과 물건 의미한다 련운, 차량운행사무소 명단 호상 세관수속과 검사 송하인 수하인 수송 수송자 집합 봉인의 상태 개봉 수표 효력발생 문건 효력을 가진다. 운수수단</p>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남 측</p> <p>통관 물품 말한다 열차·차량운행사무소 명부 상호 통관절차 송하인 수하인 운송 운송인 컨테이너 봉인의 이상유무 개장 서명 발효 문본 효력을 발생한다 통행차량, 차량</p>	<p style="text-align: center;">북 측</p> <p>세관통과 물건 의미한다 련운, 차량운행사무소 명단 호상 세관수속과 검사 송하인 수하인 수송 수송자 집합 봉인의 상태 개봉 수표 효력발생 문건 효력을 가진다. 운수수단</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측</p> <p>통관 물품 말한다 열차·차량운행사무소 명부 상호 통관절차 송하인 수하인 운송 운송인 컨테이너 봉인의 이상유무 개장 서명 발효 문본 효력을 발생한다 통행차량, 차량</p>	<p style="text-align: center;">북 측</p> <p>세관통과 물건 의미한다 련운, 차량운행사무소 명단 호상 세관수속과 검사 송하인 수하인 수송 수송자 집합 봉인의 상태 개봉 수표 효력발생 문건 효력을 가진다. 운수수단</p>		

<p>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p> <p>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p> <p>제1조 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반출”이란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어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p>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p> <p>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p>제4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p> <p>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p>
---	---

<p>제5조 검역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p>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p>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다. <p>제8조 정보제공</p> <p>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p>
---	---

<p>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p> <p>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p>	<p>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p> <p>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p>												
<p>제10조 해석 및 적용</p> <p>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p>	<p>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p>												
<p>제11조 수정 및 보충</p> <p>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문진식 박창련</p>												
<p>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p> <p>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부 록</p> <p>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p> <table border="0"> <tr> <td>남 측</td> <td>북 측</td> </tr> <tr> <td>서명</td> <td>수표</td> </tr> <tr> <td>발효</td> <td>효력발생</td> </tr> <tr> <td>문본</td> <td>문건</td> </tr> <tr> <td>효력을 발생한다</td> <td>효력을 가진다.</td> </tr> <tr> <td>말한다</td> <td>의미한다.</td> </tr> </table>	남 측	북 측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말한다	의미한다.
남 측	북 측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말한다	의미한다.												

<p>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p> <p>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지구’라고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p>
<p>제1조 정의</p> <p>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p> <p>2. “통행차량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p> <p>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미한다.</p> <p>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p>	<p>제2조 기본원칙</p> <p>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p> <p>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 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p> <p>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p>
<p>제3조 출입통로</p> <p>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p>	<p>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p> <p>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p>

<p>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p> <p>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p> <p>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p> <p>제5조 통행차량등의 출입절차</p> <p>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p> <p>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p> <p>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p> <p>제6조 출입심사</p> <p>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p>	<p>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 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p> <p>3. 북측은 통행차량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p> <p>제7조 체류</p> <p>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p> <p>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p> <p>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	--

<p>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p> <p>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p> <p>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p> <p>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p> <p>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 제한대상</p> <p>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p> <p>1. 국제테러범</p> <p>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p> <p>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p> <p>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p> <p>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p>	<p>제9조 긴급구조조치</p> <p>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p> <p>제10조 신변안전보장</p> <p>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p> <p>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p> <p>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p> <p>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p>
---	--

<p>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p> <p>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p>	<p>제13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p> <p>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p>
<p>제11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p>	<p>제14조 합의서의 적용범위</p>
<p>인원과 통행차량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p>	<p>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p>
<p>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p>	<p>제15조 수정 및 보충</p>
<p>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방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p>	<p>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p>
<p>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p>	<p>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p> <p>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p>

<p>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p> <p>이 합의서는 2004년 1월 29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2004년 1월 29일</p>	
<p>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세현</p>	<p>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책임참사 김령성</p>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 나. 채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 재산과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 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채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p>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 송금</p> <p>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한다.</p> <p>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p> <p>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p> <p>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p> <p>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p> <p>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들이 받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p> <p>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p> <p>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p>	<p>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p> <p>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p> <p>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 대위</p> <p>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분쟁해결</p> <p>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p>
--	--

<p>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p> <p>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p> <p>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p> <p>투자과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정보제공</p> <p>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p>	<p>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조 적용범위</p> <p>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조 수정 및 보충</p> <p>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p> <p>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p>
--	---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 관한합의서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상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차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보장(채목에서)	보호(채목에서)
투자자산	투자재산
지분	출자몫
의장권	공업도 안권
천연자원	자연부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기업리권
국공체	공체
법령	법
법인	실체
자연인	개별적인 사람
수용	몰수
외환시장	외국환 자시장
자유태환성통화	전환성 화폐
정관	규약
서명	수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금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p>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p>	<p>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p>
<p>제4조 거주자 판정</p>	<p>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p>
<p>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p>	<p>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p>
<p>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p>
<p>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p>	<p>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p> <p>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 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p>
<p>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p>	<p>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p> <p>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p>
<p>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p>	<p>제7조 기업이윤</p>
<p>제6조 부동산소득</p>	<p>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p>
<p>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p> <p>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p> <p>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p> <p>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p> <p>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p> <p>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 수송소득</p> <p>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p> <p>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p> <p>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p> <p>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다.</p>
---	---

<p>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p> <p>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p> <p>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 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들이 협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조 배 당 금</p> <p>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병,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p> <p>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金的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p> <p>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조 이자소득</p> <p>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	--

<p>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p> <p>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된다.</p> <p>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p> <p>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p>	<p>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p> <p>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조 사용료</p> <p>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p> <p>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p>
--	---

<p>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p> <p>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한것으로 인정한다.</p> <p>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조 재산양도소득</p> <p>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p> <p>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p> <p>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	---

<p>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p> <p>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p> <p>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p> <p>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p> <p>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 경우</p> <p>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서만 부과한다.</p>	<p>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조 이사의 보수</p> <p>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p> <p>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p> <p>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18조 연 금</p> <p>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p> <p>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는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p> <p>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p> <p>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조 기타소득</p> <p>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p> <p>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p> <p>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
---	--

<p>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p>	<p>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p>
<p>제23조 차별금지</p>	
<p>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p> <p>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p>	<p>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p>
<p>제24조 합의절차</p>	
<p>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 제1항, 제11조 제6항,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안으로 하여야 한다.</p> <p>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p> <p>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p>

<p>제25조 정보교환</p>	
<p>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법령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p> <p>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p> <p>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 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구하지 않는다.</p>	<p>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표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p> <p>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표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p>
<p>제26조 수정·보충</p>	
<p>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표된다.</p>	
<p>제27조 효력발생</p>	
<p>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를 폐기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 전에 효력을 중지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수 있다.</p> <p>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p> <p>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p> <p>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p>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p>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북남상급회담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통일부장관박재규 내각책임차사전금진</p> <p style="text-align: center;">부 록</p> <p>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p>	<table border="0"> <tr> <td style="width: 50%;">남 측</td> <td style="width: 50%;">북 측</td> </tr> <tr> <td>고정사업장</td> <td>고정영업장</td> </tr> <tr> <td>사업활동</td> <td>경영활동</td> </tr> <tr> <td>영위</td> <td>진행</td> </tr> <tr> <td>인적용역을 제공</td> <td>봉사활동을 진행</td> </tr> <tr> <td>권한있는 당국</td> <td>해당기관</td> </tr> <tr> <td>거주자 관정</td> <td>거주자 확정</td> </tr> <tr> <td>주소, 거소, 관리장소</td> <td>거류지, 거주지, 운영지</td> </tr> <tr> <td>생활하는 주거</td> <td>생활하는 살림집</td> </tr> <tr> <td>실질적인 관리장소</td> <td>실제적인 경영지</td> </tr> <tr> <td>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td> <td>건설장, 설치, 조립장</td> </tr> <tr> <td>재화</td> <td>물품</td> </tr> <tr> <td>지배관계</td> <td>종속관계</td> </tr> <tr> <td>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이용</td> <td>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td> </tr> <tr> <td>컨테이너</td> <td>집합</td> </tr> <tr> <td>국제적인 경영체</td> <td>국제적인 운영체</td> </tr> <tr> <td>조정</td> <td>조절</td> </tr> <tr> <td>발생</td> <td>조성</td> </tr> </table>	남 측	북 측	고정사업장	고정영업장	사업활동	경영활동	영위	진행	인적용역을 제공	봉사활동을 진행	권한있는 당국	해당기관	거주자 관정	거주자 확정	주소, 거소, 관리장소	거류지, 거주지, 운영지	생활하는 주거	생활하는 살림집	실질적인 관리장소	실제적인 경영지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	건설장, 설치, 조립장	재화	물품	지배관계	종속관계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이용	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	컨테이너	집합	국제적인 경영체	국제적인 운영체	조정	조절	발생	조성
남 측	북 측																																				
고정사업장	고정영업장																																				
사업활동	경영활동																																				
영위	진행																																				
인적용역을 제공	봉사활동을 진행																																				
권한있는 당국	해당기관																																				
거주자 관정	거주자 확정																																				
주소, 거소, 관리장소	거류지, 거주지, 운영지																																				
생활하는 주거	생활하는 살림집																																				
실질적인 관리장소	실제적인 경영지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	건설장, 설치, 조립장																																				
재화	물품																																				
지배관계	종속관계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이용	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																																				
컨테이너	집합																																				
국제적인 경영체	국제적인 운영체																																				
조정	조절																																				
발생	조성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p> <p>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p> <p>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p> <p>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p> <p>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p> <p>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p> <p>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p> <p>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p> <p>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 중재인의 자격</p> <p>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p> <p>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p> <p>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p>	<p>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p> <p>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중재신청</p> <p>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p> <p>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p> <p>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p> <p>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p> <p>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p> <p>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p> <p>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p> <p>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p> <p>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 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 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조 중재기간</p> <p>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p>
---	--

<p>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p> <p>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p> <p>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p> <p>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p> <p>제17조 조정</p> <p>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p>	<p>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p> <p>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8조 협의 및 수정·보충</p> <p>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p> <p>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p>
--	--

<p>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p> <p>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p> <p>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p> <p>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남 측 을 대 표 하 여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 재 규 내각책임참사 전 금 진</p>	<p>부 록</p> <p>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p> <table border="1"> <tr> <td>남 측</td> <td>북 측</td> </tr> <tr> <td>중재판정</td> <td>재결</td> </tr> <tr> <td>중재인</td> <td>재결원</td> </tr> <tr> <td>의장중재인</td> <td>책임재결원</td> </tr> <tr> <td>중재판정부</td> <td>재결원협의회</td> </tr> <tr> <td>중재인명부</td> <td>재결원명단</td> </tr> <tr> <td>법령</td> <td>법</td> </tr> <tr> <td>활동 보장</td> <td>사업 보장</td> </tr> <tr> <td>국제법의 일반원칙</td> <td>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td> </tr> <tr> <td>구성하다</td> <td>내오다</td> </tr> <tr> <td>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정</td> <td>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td> </tr> <tr> <td>서명</td> <td>수표</td> </tr> <tr> <td>문본</td> <td>문건</td> </tr> <tr> <td>확정판결과 동일하게</td> <td>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td> </tr> </table>	남 측	북 측	중재판정	재결	중재인	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활동 보장	사업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구성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남 측	북 측																												
중재판정	재결																												
중재인	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활동 보장	사업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구성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p>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p> <p>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p> <p>제1조 청산결제의 대상</p> <p>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p> <p>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p> <p>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p>	<p>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p> <p>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p> <p>제4조 신용한도</p> <p>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p> <p>제5조 결제통화</p> <p>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p> <p>제6조 청산기간</p> <p>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청산 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청산한다.</p> <p>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p> <p>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p>
---	--

<p>제8조 일반결제</p> <p>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p> <p>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p> <p>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p> <p>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p> <p>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p> <p>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p>	<p>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p> <p>부 록</p> <p>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남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북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체 89(2000)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td> <td style="text-align: center;">력사적인 공동선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용역거래대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봉사거래대금</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당해 연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연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산계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산돈자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달러화</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달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산결제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산결제주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본의 이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금이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관급회담</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급회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발효</td> <td style="text-align: center;">효력발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본</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효력을 발생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효력을 가진다</td> </tr> </table>	남측	북측	2000년	주체 89(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력사적인 공동선언	용역거래대금	봉사거래대금	당해 연도	해당 연도	청산계정	청산돈자리	미달러화	미달러	청산결제기간	청산결제주기	자본의 이동	자금이동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남측	북측																												
2000년	주체 89(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력사적인 공동선언																												
용역거래대금	봉사거래대금																												
당해 연도	해당 연도																												
청산계정	청산돈자리																												
미달러화	미달러																												
청산결제기간	청산결제주기																												
자본의 이동	자금이동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사항들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쌍방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 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p>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6.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원산지증명서 면제</p> <p>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가.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5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p> <p>나.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p> <p>다. 우편물</p> <p>라. 재반출될 예정으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p> <p>2.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북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물품의 종류, 성질, 그 상표, 제조자명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남 또는 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p> <p>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주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p> <p>2. 쌍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이 합의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p> <p>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p> <p>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p>

<p>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p> <p>다. 남북간 공정교역 및 통관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p> <p>라. 기타 남북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p> <p>2. 실무협의회는 각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p> <p>3. 실무협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한다.</p> <p>4. 제1항 나호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은 본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로서 본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p>	<p>이 합의서는 2003년 7월 31일 각각 2부 작성하였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3년 7월 31일</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정경제부차관 김광림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성현</p> <p style="text-align: center;">부 록</p> <p>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남 측</p> <p>상호 송하인 수하인 운송수단 생산장소 포장의 수 및 종류 중량 발급일자 한글 당해 물품 인장 도축 냉동 냉장 쇠고기 송품장 사유 여행자 별송품 진위 서명 부속서</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북 측</p> <p>호상 판매자 구매자 수송수단 생산지 포장/표식 무게 발급일자 조선어 해당물품 공인 도살 랭동 랭장 소고기 적선문건 리유 여행자 발송품 진실성 수표 부록</p> </td> </tr> </table>	<p>남 측</p> <p>상호 송하인 수하인 운송수단 생산장소 포장의 수 및 종류 중량 발급일자 한글 당해 물품 인장 도축 냉동 냉장 쇠고기 송품장 사유 여행자 별송품 진위 서명 부속서</p>	<p>북 측</p> <p>호상 판매자 구매자 수송수단 생산지 포장/표식 무게 발급일자 조선어 해당물품 공인 도살 랭동 랭장 소고기 적선문건 리유 여행자 발송품 진실성 수표 부록</p>
<p>남 측</p> <p>상호 송하인 수하인 운송수단 생산장소 포장의 수 및 종류 중량 발급일자 한글 당해 물품 인장 도축 냉동 냉장 쇠고기 송품장 사유 여행자 별송품 진위 서명 부속서</p>	<p>북 측</p> <p>호상 판매자 구매자 수송수단 생산지 포장/표식 무게 발급일자 조선어 해당물품 공인 도살 랭동 랭장 소고기 적선문건 리유 여행자 발송품 진실성 수표 부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해석 및 적용</p> <p>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조 수정·보충 및 발효</p> <p>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p> <p>2.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p> <p>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p> <p>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p> <p>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조 위원회 구성</p> <p>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p>	<p>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p> <p>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p> <p>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p> <p>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p> <p>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p> <p>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p> <p>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조 위원회의 기능</p> <p>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p>
--	---

<p>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p> <p>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p> <p>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p> <p>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p> <p>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p>	<p>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p> <p>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p> <p>4.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p> <p>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p>
--	---

<p>7.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p> <p>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p> <p>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 위원회 회의장소</p> <p>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중재인명부 교환</p> <p>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p>	<p>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p> <p>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 <p>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p> <p>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위원회의 활동보장</p> <p>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p>
---	--

<p>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 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p> <p>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p> <p>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p> <p>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한다.</p>	<p>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p> <p>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 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p> <p>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p> <p>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p> <p>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조 위원회의 재정</p> <p>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p> <p>2.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p> <p>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p> <p>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p>
---	---

<p>제12조 통지</p> <p>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p> <p>제13조 협의 및 수정·보충</p> <p>1. 이 합의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p> <p>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p> <p>제14조 효력발생 및 폐기</p> <p>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p>	<p>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p> <p>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p> <p>이 합의서는 2003년 10월 12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p>
---	--

<p><부 록></p> <p>쌍방의 합의서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p>	
<p>남 측</p> <p>구성 이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보좌인원 중재인 기피신청 이의신청 중재판정부 중재판정 본다 서면 서명 중재인명부 열거 교부 분쟁해결절차 서류 문서보관소 연락관 수령 문본 원본</p>	<p>북 측</p> <p>조 직 이 아래부터 본산업무에 맞는 범위 보장성원 재결원 거부신청 반대의견 제기 재결원협의회 재결 인정한다 문서교환 방식 수표 재결원명단 지적 제시 사건심리 문건 문서보관장소 연락대표 문서접수날자 문건 원문</p>

<p>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p> <p>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남과 북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에서 차량운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p> <p>제1조 정의</p> <p>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며 이를 남북 “차량운행사무소”라고 부른다.</p> <p>2. 남과 북의 분계주차장 사이 도로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 다른 운행노선을 오가는 각종 차량(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연결차 등)을 “운행차량”이라고 한다.</p> <p>3.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사상, 물건의 파손, 분실 등을 “사고”로 본다.</p> <p>제2조 기본 원칙</p> <p>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사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p>	<p>2. 군사분계선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3. 남과 북은 상대측이 운전자들과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p> <p>제3조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p> <p>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p> <p>① 운행하는 차량의 통제문제</p> <p>②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처리</p> <p>③ 운행구간에서 정상적인 안전 점검의 실시</p> <p>④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p> <p>⑤ 기타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p> <p>2.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p> <p>①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은 쌍방 당국이 임명한다.</p> <p>② 쌍방은 대표와 위원들을 교체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p>
--	--

<p>③ 공동위원회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남북사이의 관례대로 한다.</p> <p>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① 공동위원회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② 공동위원회는 쌍방의 차량운행사무소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차량운행사무소와 제3의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p> <p>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p> <p>제4조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p> <p>1.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p>	<p>2. 양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결과를 운행날짜 이전에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준다.</p> <p>3. 차량운행허가증을 받은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서만 운행할 수 있다.</p> <p>4.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규정,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p> <p>5.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p> <p>6. 운전사가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노선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승인결과를 운전사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p> <p>7. 남과 북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p>
--	---

<p>이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한 차량과 그 운전사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를 거쳐 돌려보낸다.</p> <p>8. 남과 북은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그 이유를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며 그 이유가 제거되면 즉시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p>	<p>2. 남과 북의 차량운행에 대한 정보자료를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p>
<p>제5조 상호통보 및 통신·연락</p> <p>1. 남과 북의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즉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2.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통지와 상호 통보를 위하여 차량운행사무소 직통전화, 모사전송장비(팩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p> <p>3. 남과 북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둘 수 있다.</p>	<p>제7조 탑승 인원 및 적재 화물에 대한 제한</p> <p>1. 차량운행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태울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 각호에 준하는 인원으로서 차량에 태울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p>2. 운행하는 차량에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종 무기류, 흉기류, 화약류 등 공공 안전에 위협한 물품
<p>제6조 정보교환</p> <p>1. 남과 북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기측의 교통규정, 신호체계, 도로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의약품, 각종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④ 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보아 여행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⑤ 위 각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실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p>제9조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p> <p>1. 남과 북은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를 보장한다.</p> <p>2. 차량의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p> <p>3. 남과 북은 사고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쌍방이 동일한 인원수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상자 규모가 10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② 차량과 화물의 손실정도가 EURO 10,000 이상인 경우 ③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상대측이 사고조사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 때 <p>4. 남과 북은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결과가 밝혀진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p> <p>5. 남과 북은 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이 지나 갔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협조한다.</p>
<p>제8조 통행료 납부 및 의무면제</p> <p>1. 남과 북은 운행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2. 남과 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측의 운전사와 차량에 부과되는 차량등록, 검사 및 이와 관련한 수수료 및 각종 요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p>	

<p>제10조 손해배상</p> <p>1. 차량의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사의 귀책 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2. 사고원인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3. 차량의 운전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조 차량고장시 조치</p> <p>1. 차량이 운행구간에서 고장 발생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2. 상대측 구간에서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연료 또는 부품이 부족할 경우 상대측에게 기술 또는 부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3.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 및 부품 지원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p>	<p>제12조 부속서</p> <p>이 합의서의 각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조 적용범위</p> <p>1.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이 합의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및 관례에 따른다.</p> <p>2.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차량의 운행방법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조 수정·보충</p> <p>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5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p>
--	---

<p>제15조 효력발생 및 폐기</p> <p>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p> <p>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2년 12월 6일</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국가계획위원회1부위원장 박영현</p>	<p>부 록</p> <p>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남측 정의</td> <td style="width: 50%;">북측 총칙</td> </tr> <tr> <td>노선 사항</td> <td>로정 문제</td> </tr> <tr> <td>부착 사실</td> <td>표식 표기</td> </tr> <tr> <td>정형</td> <td>정형</td> </tr> <tr> <td>담승인원</td> <td>차량에 싣는 인원</td> </tr> <tr> <td>적재화물</td> <td>싣는 화물</td> </tr> <tr> <td>위해</td> <td>오염</td> </tr> <tr> <td>각호</td> <td>조항</td> </tr> <tr> <td>상호주의 원칙</td> <td>호상성의 원칙</td> </tr> <tr> <td>귀책사유</td> <td>잘못</td> </tr> <tr> <td>지원</td> <td>방조</td> </tr> <tr> <td>소요비용</td> <td>소비비용</td> </tr> <tr> <td>부속서</td> <td>보충합의서(부록)</td> </tr> <tr> <td>문본</td> <td>원문</td> </tr> </table>	남측 정의	북측 총칙	노선 사항	로정 문제	부착 사실	표식 표기	정형	정형	담승인원	차량에 싣는 인원	적재화물	싣는 화물	위해	오염	각호	조항	상호주의 원칙	호상성의 원칙	귀책사유	잘못	지원	방조	소요비용	소비비용	부속서	보충합의서(부록)	문본	원문
남측 정의	북측 총칙																												
노선 사항	로정 문제																												
부착 사실	표식 표기																												
정형	정형																												
담승인원	차량에 싣는 인원																												
적재화물	싣는 화물																												
위해	오염																												
각호	조항																												
상호주의 원칙	호상성의 원칙																												
귀책사유	잘못																												
지원	방조																												
소요비용	소비비용																												
부속서	보충합의서(부록)																												
문본	원문																												

<h2>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h2> <h3>목 차</h3>	
<p>제1조 정 의</p> <p>제2조 기본 원칙</p> <p>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p> <p>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p> <p>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p> <p>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p> <p>제7조 차량고장시 대책</p> <p>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p> <p>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p> <p>제10조 운 입</p> <p>제11조 통신설비 및 이용</p> <p>제12조 상호 통보</p> <p>제13조 부속서</p> <p>제14조 적용 범위</p> <p>제15조 수정 및 보충</p> <p>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p>	<p>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p> <p>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운행구간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보수인원들을 “철도 직원”이라고 한다.</p> <p>4. 운행구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사상,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파손, 화물의 분실 및 파손을 “사고”로 간주한다.</p>
<h3>제2조 기본 원칙</h3>	
<p>제1조 정 의</p> <p>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p>	<p>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 철도직원과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p> <p>2.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3. 남과 북은 상대측 철도직원이 소유한 자격증과 차량에 부여한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p> <p>4.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열차안전취급규정 등</p>

<p>철도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p> <p>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p>	<p>①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11명으로 구성한다.</p> <p>②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명단은 회의에 앞서 상호 상대방에 통보한다.</p>
<h3>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h3>	
<p>1. 남과 북은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p> <p>① 수송 및 열차운행계획, 관련 절차문제</p> <p>② 운입, 요금 및 보상 등에 관한 문제</p> <p>③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처리 및 책임에 관한 문제</p> <p>④ 철도시설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문제</p> <p>⑤ 기타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p> <p>2. 공동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p>	<p>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① 공동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 공동위원회는 교대로 쌍방의 분계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공동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사이에 분계역장회의(이하 “역장회의”라 한다)를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④ 역장회의에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입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한다.</p> <p>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문에서 효력발생일을 정한다.</p>

<p>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p> <p>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 남과 북 이 1년(年)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그 교대는 해마다 1월 1일 아침 8시로 한다.</p> <p>이와 관련하여 첫 시작은 남북열차운행 개통식전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3. 남북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정기열차 와 임시열차로 구분하며 열차의 운행회 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 또 는 역장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4. 상대측 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차 승무원들과 열차 차장들은 반드시 상대 측 철도의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p>	<p>5.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운행을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며, 운행구간안의 열차 속도는 60km/h 이하로 한다.</p> <p>6. 남과 북은 열차운행구간에 대한 폐색방 식을 연동폐색방식으로 한다.</p> <p>7. 분계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한 입환작업 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가 소속된 분계 역장의 동의를 받아 열차 체류시간내에 입환작업을 할 수 있다.</p> <p>8. 상대측 열차 승무원들에게 주는 지시는 당일 분계역장이 서면으로 전달하며, 열 차가 체류하는 동안 외부경비는 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측에서 책임진다.</p> <p>9. 남과 북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상대측 분계역까지 떠나는 열차에 대한 검사와 원활한 운행 및 안전을 책임지며, 자기 측 분계역에 도착하여 인수된 열차는 해당 지역측에서 책임진다.</p> <p>10.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객·화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안에 상대측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인계·인수 및 그 절차는 공동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	--

<p>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p> <p>1. 남과 북은 수송절차와 방법, 객·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절차 와 방법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따로 제정한다.</p> <p>2. 남과 북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수 송요구서와 내용을 반영한 <월수송계 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p> <p>3. 남과 북은 매일 다음날의 열차편성 및 운행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 하고 협의하여야 한다.</p> <p>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장회의 에서 정한다.</p> <p>4. 남과 북은 상대측에 통지한 <월수송계 획>과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측에게 통지하여 협의하고 수정·보충할 수 있다.</p> <p>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p> <p>1.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발생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p>	<p>상대측에 통보하고 열차운행을 조정·변 경시킨다.</p> <p>2. 사고발생시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대측이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3. 남과 북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4.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은 사고를 책 임지는 측에서 하며, 사고의 책임이 쌍 방에 다같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 임지며 사고복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p> <p>5. 사고복구시 상대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에 응하여 공 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p> <p>6. 남과 북은 상대측의 사고복구를 지원하 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차량고장시 대책</p> <p>1. 운행과정에서 열차가 고장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열차가 운행되는 측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p> <p>③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연료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p> <p>2.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그 사실을 운행지역의 분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p> <p>1. 남과 북은 인계·인수작업과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측에 철도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p>	<p>2.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되는 철도직원들이 운행하는 열차 또는 자기측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철도 또는 도로로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p> <p>3. 철도직원직명표(부록1)에 명시된 인원들은 상대측 분계역을 출입할 경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부록 2-1) 또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상시출입증(부록 2-2)을 소지하여야 한다.</p> <p>4. 상대측 지역을 드나드는 철도직원들은 해당 지역측의 법령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분계역의 지정된 지역안에서 체류하여야 한다.</p> <p>5. 쌍방의 열차승무원들은 분계역 사이의 구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p> <p>6. 남과 북은 상대방 철도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p>
--	---

<p>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철도직원들이 자기측에서 체류하는 기간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조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송편의를 제공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p> <p>1. 운행하는 열차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① 전염병·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p> <p>③ 철도운행질서 및 사회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2. 운행하는 열차에는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① 각종 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발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물품</p> <p>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p> <p>③ 기타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조 운임</p> <p>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라 미달러(US\$) 또는 EURO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조 통신설비 및 이용</p> <p>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열차운행 관리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자기측 분계역 운전정리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한다.</p> <p>① 직통전화 및 운행중인 기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설비</p>
--	--

<p>② 모사전송장비(FAX)</p> <p>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장비</p> <p>2. 남과 북은 운행열차의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FM 단신 방식 150~170MHz로 하며 정기적으로 시험통화를 진행한다.</p> <p>3. 남과 북은 분계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들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조 상호 통보</p> <p>1.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p> <p>2.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① 운행구간의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경우</p> <p>② 도착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p>	<p>③ 화물의 수송계약 취소로 변동이 있는 경우</p> <p>④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p> <p>⑤ 기타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조 부속서</p> <p>이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조 적용 범위</p> <p>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분계역 사이에서만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되 쌍방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2. 남과 북은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조 수정 및 보충</p> <p>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충되는 조항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p> <p>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교환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4년 4월 13일</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p>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p> <p style="text-align: center;">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는 철도직원 직명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직명</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분계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열차운용팀장, 열차운용원, 역무원</td> </tr> <tr> <td>2</td> <td>분계역연락사무소장, 부소장, 화물담당직원, 객화차담당직원, 화물원, 검차원</td> </tr> <tr> <td>3</td> <td>차량사무소장, 기술과장, 차량분소장, 차량관리팀장,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 검사원, 기관차승무사무소장, 열차승무사무소장, 운용팀장</td> </tr> <tr> <td>4</td> <td>기관사, 부기관사, 지도팀장, 여객전무, 차장, 차장관리원, 수소화물원</td> </tr> <tr> <td>5</td> <td>시설관리사무소장, 분소장, 시설관리원</td> </tr> <tr> <td>6</td> <td>전기사무소장, 기술과장, 팀장, 기술원, 분소장, 선임전기장, 부전기장, 전기원</td> </tr> <tr> <td>7</td> <td>자동차운전원</td> </tr> <tr> <td>8</td> <td>사고조사 담당직원</td> </tr> </tbody> </table>	No.	직명	1	분계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열차운용팀장, 열차운용원, 역무원	2	분계역연락사무소장, 부소장, 화물담당직원, 객화차담당직원, 화물원, 검차원	3	차량사무소장, 기술과장, 차량분소장, 차량관리팀장,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 검사원, 기관차승무사무소장, 열차승무사무소장, 운용팀장	4	기관사, 부기관사, 지도팀장, 여객전무, 차장, 차장관리원, 수소화물원	5	시설관리사무소장, 분소장, 시설관리원	6	전기사무소장, 기술과장, 팀장, 기술원, 분소장, 선임전기장, 부전기장, 전기원	7	자동차운전원	8	사고조사 담당직원
No.	직명																		
1	분계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열차운용팀장, 열차운용원, 역무원																		
2	분계역연락사무소장, 부소장, 화물담당직원, 객화차담당직원, 화물원, 검차원																		
3	차량사무소장, 기술과장, 차량분소장, 차량관리팀장,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 검사원, 기관차승무사무소장, 열차승무사무소장, 운용팀장																		
4	기관사, 부기관사, 지도팀장, 여객전무, 차장, 차장관리원, 수소화물원																		
5	시설관리사무소장, 분소장, 시설관리원																		
6	전기사무소장, 기술과장, 팀장, 기술원, 분소장, 선임전기장, 부전기장, 전기원																		
7	자동차운전원																		
8	사고조사 담당직원																		

부록 2-1 임시출입증

8cm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임시출입증</td> </tr>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사진 (2×2.5) </div> </td> <td style="padding: 5px;">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가</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발행기관 (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앞 면 ></p>	임시출입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사진 (2×2.5) </div>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가		발행기관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발행번호 : 제 호</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뒷 면 ></p>	발행번호 : 제 호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시출입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사진 (2×2.5) </div>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가															
발행기관 (인)															
발행번호 : 제 호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록 2-2 상시출입증

8cm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상시출입증</td> </tr>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사진 (2×2.5) </div> </td> <td style="padding: 5px;">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가</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발행기관 (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앞 면 ></p>	상시출입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사진 (2×2.5) </div>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가		발행기관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발행번호 : 제 호</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뒷 면 ></p>	발행번호 : 제 호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시출입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사진 (2×2.5) </div>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가															
발행기관 (인)															
발행번호 : 제 호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정의	총칙
철도직원	철도일군
인명	사람
따른다.	준한다.
부여한	있는
사항	문제
개최	진행, 조직
정산	청산
일일	일간, 일
입환작업	차같이작업
체류하는 동안	머무르는 기간
인도·인수	인수도
조정	조절
운송수단	운수수단
상호	호상
명시된	지적된
상시출입증	고정출입증
탑승인원	열차에 싣는 인원
적재화물	싣는 화물
총포류	총기류
운전정리실	운전지휘실
사실	정형
상황	정황
시행	집행
부속서	부록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임시도로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한다.
 2.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 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체결된 국제연합군측과 조선인민군측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에 체결된 남북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
3.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동·서해지구 기본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수석대표 북측단장
대령 문성묵 대좌 유영철

개성공단관련 법규집

발행처 통일부 교류협력국(경협지원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725-3588

인쇄처 웃고문화사(주)

발행일 2004년 4월